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('22.7.14일)

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

2022. 7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가계·기업대출 및 취약부채 현황 ······· 1
Ⅱ.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민생영향 2
Ⅲ.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6
1. 자영업자·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······ 6
2.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8
3.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9
4. 서민·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및 민생범죄 근절 ···· 10
IV. 향후 추진계획 ······· 11

I. 가계·기업대출 및 취약부채 현황

□ 코로나19 이후 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, 금리상승 가속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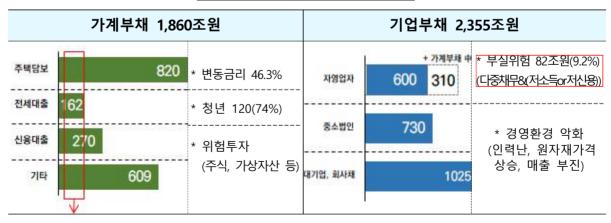
○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민간부채(가계+기업)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, '21년 하반기부터 시장·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



□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·변동금리 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

○ 가계부채는 금리상승에 따른 **대출이자 부담 증가**, 소상공인 등 기업부채는 영업부진에 따른 **상환능력 악화**가 주요 위험요인

민간부채 주요 취약부문(예시) ('21말, 조원)



※ 2030 부채 : 508조원(27%)

※※ 기타 :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, 예적금담보대출 등

II.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민생영향

□ 자영업자·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실화 가능성

- 만기연장 등에 힘입어 지표상 **연체율은 아직 양호***하나, 코로나19 위기중 매출부진**을 추가대출로 충당하면서 **채무부담이 누적**
 - *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(%): ('19) 0.71 ('20) 0.59 ('21) 0.43 ('22.3) 0.45
 - ** 자영업자 연평균 매출액(백만원) : ('17) 174 ('18) 172 ('19) 169 ('20) 157 ('21) 164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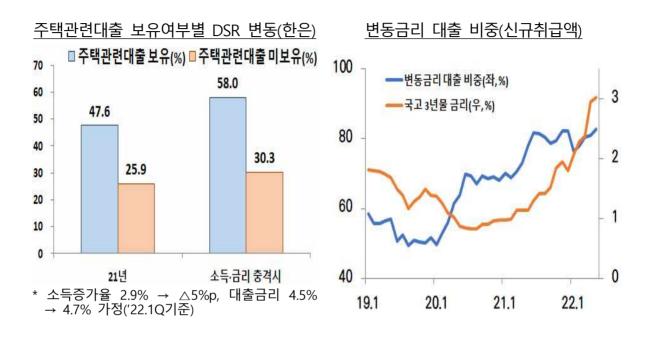


- 코로나19 이후 비은행을 이용하거나 여러 곳에서 빚을 낸 **다중** 채무자가 급증하는 등 부실위험이 증가
 - 자영업자 등은 변동금리·일시상환·단기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리스크에 취약하고, 차환리스크도 큰 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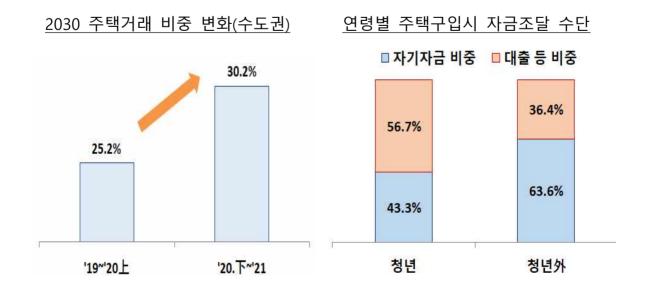


□ 주거 관련 가계차주의 금융부담 증가

○ 대출규모가 크고, 변동금리 조건이 많은 **주택관련대출**(주택담보 대출, 전세대출)의 경우 **금리상승**에 따라 **상환부담이 크게 증가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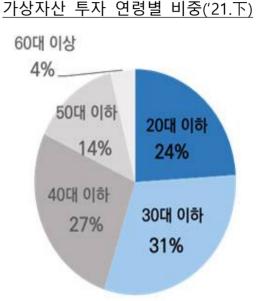
- 특히, '20.下~'21년 주택가격 급등기에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20·30세대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
 - 최근 금리 상승으로 20·30세대 주택구입이 감소할 경우 전세 수요가 증가하여 전세대출 수요와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



□ 주식, 가상자산 등 청년 자산투자자의 투자손실 확대

- 많은 청년들이 **저금리 환경**에서 재산 형성수단으로 저축 대신 돈을 빌려 **주식·가상자산** 등 **위험자산에 투자**
 - * 2030세대 신용융자 잔액(주요 10개 증권사, 조원) : ('20.6말)1.9 → ('21.6말)3.6





○ 최근 금리상승 여파로 **자산가격이 급속히 조정**되면서 상당수 **자산투자자**가 투자실패 등으로 **경제적·심리적** 어려움에 직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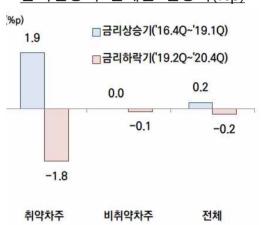
□ 서민 등 취약차주 부실 및 금융접근성 약화 우려

- 가계대출 중 약 5.0%*(93조원)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능력
 악화가 우려되는 부실위험 대출로 추정
 - * 취약차주 : 다중채무자(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)이면서 저소득(하위 30%) 또는 저신용(NICE 신용점수 664점 이하) 차주

취약차주 대출 규모(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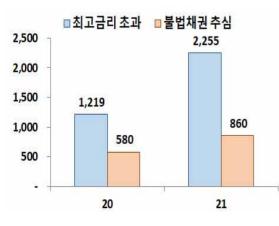
전체대출(1,860) 다중채무자(597) 취약차주(93)

금리변동시 연체율 변동폭(%p)



- 특히, 低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될 경우 생계곤란 및 불법사금융 노출 등 사회문제화 우려
- '21.7월 최고금리 인하(20%)가 시장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리면서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*
 - * 저신용자(6~10등급) 중 43.4%가 대부업체에서 대출 거절(서민금융연구원 설문조사)

불법사금융 신고 접수 현황(건)



최고금리, 대부업대출 추이



Ⅲ.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

◆ (기본방향)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·가계·청년·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(저금리, 고정금리, 상환기간 연장 등), 채무조정(원리금 감면), 신규자금지원(생계비, 긴급자금 등) 등 금융지원 노력 강화

자영업자·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

- ◇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을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자생력 회복을 지원
- □ 상환유예 중심의 임시적 금융구호 체계('20.4~)를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

○ 긴급 유동성 공급(추가자금)

· 만기연장·상환유예 실적(누적) : 291조원

· 정책금융 대출·보증공급 : 36.4조원

※ 부채규모 : ('19말) 693 → ('21말) 916

코로나19 대응 금융구호('20.4~'22.9월) **새정부 재무구조개선 프로그램('22.10월~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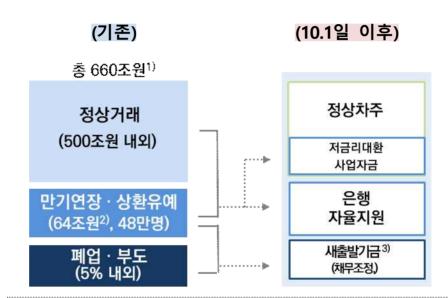
- 실질적 부채 상환부담 조정
- · **상환곤란** 차주 →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
 - · **금융부담 과다** 채무 → 長期·低利 대환
 - · 경쟁력 취약 치주 → 리모델링, 사업내실화 사업자금 지원 등
- ① (새출발기금) 30조원 규모 부실(우려)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
 - 거치기간(최대 1~3년), 장기·분할상환(최대 10~20년), 대출금리 인하
 -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**과감한 원금감면**(60~90%)
- **②** (대환대출) 고금리(7%↑)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(8.7조원*)
 - * 전체 소상공인(8.5조원)^{금융위} + 저신용 소상공인(0.2조원)^{중기부}
- **③** (사업자금) 리모델링,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(42.2조원*)
 - * 전체 소상공인(41.2조원)^{금융위} + 폐업 소상공인(1조원)^{중기부}

□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가 만료("22.9월말)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<mark>촘촘한 보완장치</mark> 준비

- o 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, 5년 분할상환토록 旣조치
- 10월 이후에도,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**만기연장·상환** 유예가 이루어지도록 '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'를 추진할 계획
 - *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중인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, 자율적으로 90~95%는 만기연장·상환유예 해주는 방안을 논의중
- ⇒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, 금융권, 정부가 적절히 분담

<부채규모> ('21년말) 자영업자· 소상공인 채무 916조원 (263만명)

정책대상 660조원¹⁾ (220만명)



- 1) 소상공인 채무 910조원 중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대출
- 2) 만기연장·상환유예 대상채권 잔액 130조원 중 소상공인 대출
- 3) 채권금융기관이 새출발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는 대신 자체 보유하면서 채무조정에 동의할 경우, 지원 확대 가능

□ 관계부처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과 금융지원 프로그램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빅데이터 상권분석 등 민간 금융권 서비스도 활성화

- <u>컨설팅^{증기부}(온라인 판로지원, 마케팅 등)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</u> ·한도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추진
 - * 소상공인 컨설팅^{중기부}과 금융지원(정책금융기관, 시중은행)^{금융위}이 연계되도록 금융기관 지점을 통한 안내·홍보도 강화
- **정책금융기관**(서금원, 기은, 신보 등)의 **경영 컨설팅**, 민간 금융 회사의 **빅데이터 상권분석** 등을 활성화하여 **경쟁력 제고** 뒷받침

2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

□ (상환부담 경감) 고정금리 전환 지원과 만기확대 추진

- 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을 40조원* 공급(올해 2차추경, 내년 본예산을 통해 각 20조원)
 - *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(380조원)의 10.5% 수준
 - 예산투입 없이,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**5조원 추가 확대** (20→25조원)하고 **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 인하**(10bp)
- ②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^{*}하여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
 - * 민간 금융회사는 30→40년, 정책금융기관(주택금융공사)은 40→50년으로 확대

□ (임차안정) 대출 세제 우대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

-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低利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*
 - * 주금공 전세대출보증한도 : (기존) 2억원 → (확대) 4억원 (보증비율은 90~100%) ※ 전세대출 보증기관별 점유율(%) : (주금공) 45.2 (HUG) 22.2 (SGI) 32.6
- ②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·한도를 확대^{국토부*}
 - * 버팀목 전세대출한도/대상 전세금 상한(억원, 수도권) : (기존)1.2/3.0 → (개선)1.8/4.5
- ❸ 전·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 확대(연 300→400만원)기재부

□ (금리상승 완화) 시장경쟁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리전가 방지

- 1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·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 도입
- ②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,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점검·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한 금리산정의 합리성·투명성 제고
- ❸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 준비·출시
 - * 예 : 7%이상 고금리차주에 금리 1%p 인하, 성실상환 연체 신용차주에 대출원금감면 지원

◇ 청년·서민의 **투자 실패**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**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**를 신설하고 **기존 제도간 연계** 강화

(민간 자 율 조정)	(공적 조정제도)	(법원 회생제도)
은행 프리워크아웃	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연체채권 매입펀드	회생법원
연간 22만명 내외	신복위 11만명 / 캠코 3만건	8.1만명

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설

○ <u>청년층의 신속한 회생·재기를 위해 종전 신청자격 미달</u> (예: 연체이전)이더라도 **이자 감면, 상환유예** 등 지원(1년간 한시 운영)

구분	일반 프로그램	청년 특례 프로그램
이자감면	<u>없음</u> (약정이자율 최대 15%)	채무과중도(소득, 재산 감안)에 따라저신용 청년 30~50% 감면※ 예: 10% → 5~7%(3~5%p↓)
상환유예	원금 상환유예 기간중(0~3년) 약정이자율(최대 15%) 납부	원금 상환유예 기간중(0~3년) 저신용 청년* 이자율 3.25% 적용
신청비	납부 (5만원)	<u>면제</u>

^{*} 만 34세 이하, 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(NICE 744점, KCB 700점)

② 캠코가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과잉추심 우려 등 방지

-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(2조원)* 신청기한을 연장(~'22.6말→~연말)하고, 필요시 규모 확대
 - * 은행에서 3월이상 연체된 가계 신용대출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원금감면 등 지원

③ 금융회사-신복위-법원간 연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재기 지원

- 관계기관간 협의체* 신설을 추진하여 유기적 연계·협업 강화
 - *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& 신복위 채무조정 & 법원 개인회생
- **신용회복위원회 법원간 Fast-Track*** 활성화를 통해 청년· 서민 등의 **신속한 사회복귀** 지원
 - * 신복위 채무상담을 거쳐 법원회생이 유리하면 법원심리 간소화 등을 지원

서민·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및 민생범죄 근절

4

◇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로부터 보호

□ (서민금융) 서민·저신용층에 대한 공공·민간의 금융 접근성 제고

- 서민·취약계층을 위해 금년중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원 공급 ('17~'21년 평균 공급액은 7.9조원 수준)
 - 최고금리(20%)와 시장금리간 **격차 축소**로 인한 **저신용층의 탈락 방지**를 위해 **정책금융**의 역할이 긴요
 - 청년, 저신용층,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강화
 - * (청년) 햇살론유스 공급 0.2→0.3조원, (최저신용자) 특례보증 0.24조원, (저소득 근로자) 근로자 햇살론 공급 2.4→2.6조원
- 한시적으로 운영*되는 **정책서민금융 재원**의 **안정적 확보방안 검토**
 - * 서민금융의 주요 재원인 복권기금은 '25년까지 한시 출연→추가재원 확보 필요
- 새희망홀씨 대출 등 은행권의 저소득층 대상 금리우대 상품을 활성화하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점검·확대
- 가급적 많은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기 (최대 10년) 자산형성 상품 출시('23년)

□ (민생범죄)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

-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**제도 개선***
 * 예: 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(現100만원), 비대면 실명확인 강화 등
-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확대,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급 등 보이스 피싱 피해자 보호 강화
- 불법 주식리딩방 등 사회관계망(SNS) 기반 **불법행위 근절**을 위해 **암행·일제단속을 강화***하고 **투자자 보호제도** 개선** 추진
 - * 연 600개 이상 업체에 대한 암행·일제점검 실시(금감원·거래소·금투협)
 - ** 예) 당국에 등록하여 감독받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의 양방향 온라인 채널 (단톡방 등)을 통한 투자자문 금지 → 위반시 형사처벌(개정안 국회 논의중)

IV. 향후 추진계획

- □ 소상공인·주거·채무조정·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·시행
 - 법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, 정책여건 등에 맞추어, '22.3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 완료 예정
- □ 금융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, 청년·서민 등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,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 지속 강구
 - ① 「금융리스크 대응 TF」를 통한 리스크요인 점검 및 대응
- ② 「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」를 통한 현장소통 및 추가지원 모색
- ◆ 금번 대책 효과와 향후 경제여건 변동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추가 지원책 마련 추진

정책 과제	조치사항 · 시기	시행시기
1. 자영업자·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		
▶ 만기연장·상환유예 금융권 자율관리계획 시행	자율관리 수립	9월하순
▶ 자영업자·소상공인 채무조정(새출발기금, 30조원)	신청접수 개시	9월하순
▶ 자영업자·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(8.5조원)	신청접수 개시	9월하순
▶ 자영업자·소상공인 사업내실화 등 자금 지원(41.2조원)	자금지원	7월
2.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		
▶ 안심전환대출 25조원으로 확대 공급	내규개정	9월중순
▶ 저소득 청년층 안심전환대출 추가 우대	내규개정	9월중순
▶ 대출최장만기 확대(민간 30→40년, 공공 40→50년)	내규개정	민간 旣시행 공공 8월중순
▶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	내규개정	10월
▶ 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	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('22.7월)	8.1일
▶ 전·월세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확대	소득세법 개정	'22.하반기
* '22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	('22.下)	22.이런기
▶ 예대금리차 월별 비교공시 도입	시스템 구축	8월
▶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등 금리산정 투명성 제고	모범규준 개정	3분기
3. 청년 등 자산투자자 재기지원 : 채무조정		
▶ 청년 등 대상 강화된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시	신복위 협약개정	9월하순
▶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 연장	신청기간 연장	旣시행
▶ 재기지원 관련 금융권-신복위-법원 연계 강화	협의체 신설	3분기
4. 서민·저신용층 금융지원 보강 및 민생범죄 근절		
▶ 서민금융상품 10조원 공급	_	연중
▶ 은행권 자체 서민지원 확대 유도	<u> </u>	계속
▶ 보이스피싱 관련 제도개선	제도개선안 마련	3분기
▶ SNS 기반 불법행위 근절 단속, 소비자 보호 강화	법률 개정	'22.하반기

별첨1 프로그램 신청 방법

□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, 주택금융공사,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문의·상담후 이용 가능

< 제도안내 및 문의·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>

구분	기관명	연락처
1. 자영업자·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		
▶ 자영업자·소상공인 채무조정(새출발기금)	한국자산관리공사	051-794-2024
▶ 자영업자·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	신용보증기금	053-430-4345
7 시 O U 시 그 O O U 시 U U U U U U U	소상공인진흥공단	042-363-7204
	기업은행	02-729-7000 02-729-6620
자영업자·소상공인 사업내실화 등 자금지원	신용보증기금	02-710-4590
	지역신용보증기금	042-480-4034
2.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		
▶ 안심전환대출 25조원으로 확대 공급 [*]	주택금융공사	051-663-8272
▶ 저소득 청년층 안심전환대출 추가 우대 [*]	주택금융공사	051-663-8272
▶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^{**}	주택금융공사	051-663-8402
▶ 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	주택도시보증공사	051-998-2265
3. 청년 등 자산투자자 재기지원 : 채무조정		
▶ 청년 등 대상 강화된 채무조정 프로그램	신용회복위원회	O2-75O-1155 O2-75O-1139
▶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	한국자산관리공사	051-794-2024
▶ 재기지원 관련 금융권-신복위-법원 연계 강화	신용회복위원회	02-750-1072
4. 서민·저신용층 금융지원 보강 및 민생범죄 근절		
▶ 서민금융상품 10조원 공급	서민금융진흥원	02-2128-8086
▶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신고 금융감독원		국번없이 1332
▶ SNS 기반 불법행위 신고	금융감독원	국번없이 1332

^{* 9}월 이후 신청 가능 ** 10월 이후 신청 가능

별첨2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125조원+a 사업 현황

분	야	사업명	지원규모	경과 및 계획
	0	 자영업자·소상공인 채무조정 > (개요) 새출발기금 설립 → 부실(우려)채권 매입 등을 통한 상환일정조정, 금리·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* 일시상환 → 분할상환(최장 20년까지), 이자·원금 감면(60~90%) 등 ■ (예산) '22년 캠코출자 1.1조원, '23년 2.5조원 	30조원	 ■ 6월, 세부조건 협의 ■ 7월, 금융권 협약체결 ■ 8~9월 시행령 등 개정 전산구축 ■ 9월 하순경 시행예정
소 상공 인	2	<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> '22.10월 시행 ■ (개요)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■ (예산) '22년 신보출연 0.68조원	8.5조원	 ■ 6월, 세부조건 협의 ■ 7월-9월 규정개정 및 전산구축 ■ 9월, 금융권 협약 ■ 9월 하순경 시행
	8	< 맞춤형 자금 지원 > '22.下 시행 ■ (개요) 자영업자 맞춤형 저리신규대출 지원 ■ (예산) '22년 신보출연 0.2조원	41.2조원* * 예산사업 3.3조원 * 자체사업 38조원	6월, 상품설계 및 시스템 구축7월중 시행 예정
<u>서</u>	4	<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 > '22.6월 시행 ■ (개요)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저리대출 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 ■ (예산) '22년 서금원 출연 150억원	0.1조원	■ 6월, 旣시행
민금융	6	<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 > '22.下 시행 ■ (개요)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 특례보증 실시 ■ (예산) '22년 서금원 출연 480억원	0.24조원	 ■ 6~7월, 상품설계 및 전산개발 관련 금융권 협의완료 ■ 7~9월, 내규개정 및 전산구축 ■ 10월초 시행예정
가 계 차 주	6	< 안심전환대출 > '22.下 시행 ■ (개요) MBS유동화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·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대출금리 인하 ■ (예산) 주금공 출자 1,090억원	45조원	 ■ 6~7월, 상품설계 및 금융권 협의 ■ 7~8월 내규개정 및 전산구축 ■ 9월중 시행 예정
7	4	예산소요 4.7조원('22~'23년)	125+α조원	-

^{* &#}x27;23년 예산편성 논의중